「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」 도입을 위한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개정안에 관하여

2022. 6.

법무법인 이후

1. 개요

□ ’22. 5. 26.(목) 국무회의에서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‘자본시장법’) 개정안이 의결되고, ’22. 5. 27.(금) 국회에 제출되었음. **본 개정안은 상장 이전의 벤처·혁신기업에 집중투자하는 새로운 투자기구인 ‘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’를 도입[1]하는 내용임.**

□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는 미국의 Business Development Company(이하 ‘BDC’)와 유사한 제도로 벤처기업 등의 지속적 성장을 위하여 장기 투자를 유도하되 투자자들의 환금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하고 거래소에 상장하여 벤처기업 등을 위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임.

□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는 **펀드자산의 일정비율 이상을 벤처·혁신기업 등에 투자**함. 환매금지형(폐쇄형) 펀드이지만 **상장을 통해 투자자의 투자금 회수**를 용이하도록 할 예정이며, **금전차입 · 대출을 허용하는 등 기존의 공모펀드에 비해 규제를 완화**할 예정임.

2. 주요 내용

□ (**기본방향**) 공모펀드의 **규모의 경제**와 **투자자 보호장치**가 적용되는 가운데, 사모펀드의 **유연한 운용전략**을 활용해 **비상장·혁신기업에 자금을 공급**하는 “**새로운 형태의 투자기구**”로 도입.

□ (**주요내용**) **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**는 인가·설정·운용·회수의 **全단계**에 걸쳐 **공·사모펀드의 장점을 융합**하는 형태로 설계.

가. 정의

□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란 집합투자기구의 **자산총액 중 100분의 40 이상**

1) 금융위원회 2022. 5. 26. 보도자료 내용; 「❶ 성장하는 기업에게 안정적인 자금조달 경로를 제공하고, 일반투자자에게는 제도권 내 투자수단을 통해 벤처·혁신기업에 분산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, ❷ 풍부한 시중유동성을 모험자본으로 활용하여 경제의 활력을 높이고, ❸ 전문성 있는 운용주체와 자본시장법상 잘 정비된 규율체계를 통해 건전한 투자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」

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집합투자재산을 성장 가능성이 높은 **「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」에 따른 벤처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조합** 등(이하 '**주투자대상기업**')에 **금전의 대여, 매입 등**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를 의미함(안 제229조 제6호)

□ 기업성장투자업은 "집합투자업 중 제229조 제6호에 따른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를 통한 집합투자를 영업으로 하는 것"을 말하고(안 제9조 제30항), 기업성장집합투자업자란 "집합투자업자 중 기업성장집합투자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함"(안 제9조 제31항)

나. 인가

■ 인가제도를 통해 역량과 책임감을 갖춘 주체가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할 수 있도록 계획.

※ 인가방향 : 시행령 등 개정 사항

□ (**인가대상**) 자산운용사, 증권사, 벤처캐피탈(VC) 등

□ (**물적요건**) 일정수준 이상의 **자기자본**과 **증권운용인력** 보유

□ (**이해상충방지체계**) **일부사항**(예: 기업금융업무)에 대해서는 **완화 적용**하되, 기본적으로 **현행 이해상충방지체계를 준용**

□ (**대주주요건**) 금투업 **신규인가시 대주주 심사요건보다 완화된 기준**을 적용하여, 혁신기업 투자에 전문성 있는 주체의 연속성 있는 진입 지원

⇨ **시장과의 지속적인 소통**을 통해 **시행령 등 하위법규 개정시 구체화**

□ 기업성장집합투자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기본적으로 **금융투자업자와 동일하게 신규인가**를 받도록 하되, **대주주 요건에 대해서는 변경인가시의 완화된 요건을 적용**함(안 제12조 제2항 제6호, 안 제16조 제2항).

□ 대주주에 대하여 완화된 요건이 적용되어 VC 등 벤처투자에 전문성 있는 자가 보다 원활히 진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.

「참고조문 - 자본시장법」

제12조(금융투자업의 인가) ①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성요소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단위(이하 "인가업무 단위"라 한다)의 전부나 일부를 선택하여 금융위원회로부터 하나의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아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라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.

1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일 것

가. 「상법」에 따른 주식회사이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

나. 외국 금융투자업자(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금융투자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. 이하 같다)로서 외국에서 영위하고 있는 영업에 상당하는 금융투자업 수행에 필요한 지점, 그 밖의 영업소를 설치한 자

2.~5. (생 략)

6. **대주주나 외국 금융투자업자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**(기업성장집합투자업의 경우에는 제16조제2항에 따른 완화된 요건으로 한다)**을 갖출 것**

가. 제1호가목의 경우 **대주주**(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주주를 포함하며,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)가 **충분한 출자능력,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**

나. 제1호나목의 경우 외국 금융투자업자가 **충분한 출자능력,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**

제16조(업무의 추가 및 인가의 변경) ① 금융투자업자는 제12조에 따라 인가받은 인가업무 단위 외에 다른 인가업무 단위를 추가하여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려는 경우에는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. 이 경우 제14조를 적용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변경인가를 함에 있어서 제12조제2항제6호의 인가요건에 관하여는 같은 호에도 불구하고 **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완화된 요건을** 적용한다.

「참고조문 - 자본시장법 시행령」

19조의2(변경인가요건의 완화) 법 제16조제2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완화된 요건"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말한다.

1. 대주주가 별표 2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: 같은 표 제1호라목 및 마목1)·3)에 한정하여 그 요건을 충족할 것. 이 경우

같은 표 제1호마목1) 중 "최근 5년간"은 "최대주주가 최근 5년간"으로, "벌금형"은 "5억원의 벌금형"으로 본다.

2. 대주주가 별표 2 제4호 또는 제5호라목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: 같은 표 제1호마목1)·3) 및 제4호라목에 한정하여 그 요건을 충족할 것. 이 경우 같은 표 제1호마목1) 중 "최근 5년간"은 "최대주주가 최근 5년간"으로, "벌금형"은 "5억원의 벌금형"으로 하고, 같은 표 제4호라목 중 "최근 3년간"은 "최대주주가 최근 3년간"으로, "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"은 "5억원의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"로 본다.

3. 대주주가 별표 2 제5호(라목은 제외한다)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: 같은 표 제1호마목1)·3)에 한정하여 그 요건을 충족할 것. 이 경우 같은 표 제1호마목1) 중 "최근 5년간"은 "최대주주가 최근 5년간"으로, "벌금형"은 "5억원의 벌금형"으로 본다.

4. 법 제12조제2항제6호나목에 따른 외국 금융투자업자인 경우: 제2호의 요건에 한정하여 그 요건을 충족할 것. 이 경우 "최대주주"는 각각 "외국 금융투자업자"로 본다.

[별표2] 대주주의 요건(제16조제6항 관련)

라. 출자금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차입하여 조성된 자금이 아닐 것

마. 다음의 요건을 충족할 것. 다만, 그 위반 등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.

1) 최근 5년간 금융관련법령,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 및 「조세범처벌법」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. 다만, 법 제448조, 그 밖에 해당 법률의 양벌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.

3) 「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었거나 법 또는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영업의 허가·인가·등록 등이 취소된 금융기관의 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(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거나 영업의 허가 등이 취소될 당시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3조의2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독립경영자에 해당하거나 같은 목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동일인관련자의 범위에서 분리되었다고 인정을 받은 자는 제외한다)이 아닐 것. 다만, 법원의 판결에 따라 부실책임이 없다고 인정된 자 또는 부실에 따른 경제적 책임을 부담하는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.

다. 설정·설립요건

□ **(설립형태·존속기간)** 벤처·중소기업에 장기투자할 수 있도록 **환매금지**

형집합투자기구로 설정·설립하도록 규정하고(안 제229조의2 제1항 제2호), **5년 이상의 최소 존속기간**을 두도록 규정함(안 동항 제3호).

□ **(최소 설립규모)** 최소 설립규모는 **500억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**이 되도록 규정함(안 동항 제4호).

* 금융위 보도자료 중; 「또한, 추후 시행령에서 최소 모집가액(예: 300억원)을 규정함으로써, 유효한 규모의 모험자본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」

□ **(의무출자·보유)** 운용사가 **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자산의 10% 이하**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까지 의무출자하고, **3년 이상**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의무보유하도록 규정(안 동조 제2항).

□ 그러나 환매금지에도 불구하고 아래에서 상술하는 바와 같이 거래소 상장을 통한 투자금 회수가 가능하므로 투자자의 환금성은 높을 것으로 보임.

「참고조문 - 자본시장법」

제229조의2(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) ①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를 설정·설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. 다만, 전문투자자의 투자금만으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를 설정·설립하는 경우에는 그 설정·설립일부터 3년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제4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.

1. 투자신탁 또는 투자회사로 설정·설립할 것
2. 제230조에 따른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로 설정·설립할 것
3. 존속기간은 5년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할 것
4. 모집가액은 5백억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일 것

② 기업성장집합투자업자는 자기가 설정·설립한 각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 총수(추가설정 또는 신규발행된 증권 수를 포함한다)의 100분의 10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증권 수 이상의 집합투자증권을 3년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유하여야 한다.

라. 운용

1) 운용 규제

□ **(적용 배제)** 기업성장투자기구가 **주투자대상기업**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**공모펀드에 적용되는 통상의 운용규제의 적용을 원칙적으로 배제**하고 (안 제81조 제1항) **별도의 운용규제를 적용**함.

□ **주된 투자대상기업**에 대한 **투자비율 준수**를 의무화하되, **1년 이내의 범위**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유예 허용(안 제81조 제4항).

□ **동일 법인**에 대한 집중 투자한도는 **집합투자재산의 20% 이내**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까지 제한하고(안 동조 5항 2호), **동일 법인**에 대한 투자비율을 **피투자기업 지분의 50%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행위를 금지**함(안 동항 3호).

□ **국채, 통안채 등 안전자산**에 **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자산의 10% 이상**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까지 투자하도록 의무화(안 동항 4호).

□ 여유자산으로 부동산 투자 및 그에 준하는 운용행위를 할 수 없도록 제한(안 동항 5호).

「참고조문 - 자본시장법」

제81조(자산운용의 제한)

④ 제1항제1호가목 및 마목부터 사목까지와 제3호가목·나목, 제229조 각 호에 따른 투자비율은 집합투자기구의 최초 설정일 또는 설립일부터 6개월(제229조 제2호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와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의 경우 1년)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는 적용하지 아니한다.

⑤ 기업성장집합투자업자는 제229조제6호에 따른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1. 제229조제6호를 위반하여 운용하는 행위

2. 각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20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집합투자재산을 동일한 주투자대상기업(제229조제6호에 따른 주투자대상기업을 말한다. 이하 제3호 및 제5호에서 같다)에 투자하는 행위

3. 주투자대상기업이 발행한 지분증권 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지분증권 수(동일한 기업성장집합투자업자가 설정·설립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동일한 기업성장집합투자업자가 설정·설립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한 지분증권 수를 모두 더한 지분증권 수를 말한다)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

4. 다음 각 목의 금융투자상품에 각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의 집합투자재산을 투자하지 아니하는 행위

가. 국채증권

나. 「한국은행법」 제69조에 따른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

다.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

라. 그 밖에 금융투자업자의 경영건전성을 저해하지 아니하고 투자성이 낮은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상품

5. 주투자대상기업에 투자한 재산 외의 집합투자재산을 제229조제2호에 따른 부동산에 투자하는 행위

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기업성장집합투자업자가 가격 변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하게 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.

2) 금전 차입 및 대출 허용

□ **(금전 차입 허용)**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가 **주투자대상기업**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금전차입을 허용(안 제83조 제1항). 다만 **순자산의 100% 이내**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 이내로 차입한도를 제한(안 동조 제2

항 제2호).

□ **(대출 허용)**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는 **주투자대상기업**에 금전을 대여할 수 있음(안 동조 제4항 제2호).

□ 기존의 공모펀드와 달리 금전 차입을 허용하여 원활한 자본 조달이 가능하고, 지분투자에 비해 대출을 선호하는 벤처기업에 대하여도 피투자기업의 수요에 맞춰 자금 공급 가능.

[금융위 보도자료 중 발췌]

(**운용**)유연한 투자전략 구사를 허용하면서, 공모펀드의 성격을 감안하여 자산운용의 안전성 확보장치를 마련합니다.

- **차입과 대출이 허용**되므로, **지원규모가 확대**되고 **피투자기업 수요에 맞는 형태의 자금공급***이 가능해집니다.

  * [예] 일부 혁신기업은 지분율이 희석되는 지분투자 대신 대출 선호

- 한편, **안전자산 투자 의무화***, **동일기업 투자한도 규제 적용** 등 **자산운용의 안전성**을 위한 장치도 마련합니다.

  *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% 이상을 국채·통안채 등에 투자해야함

【 투자기구간 운용규제 비교 】

구 분	공모펀드	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	사모펀드
차 입	불가	**가능** **(최대 순자산 100% 이내*)**	가능 (순자산 400% 이내)
대 출	불가	**가능**	가능
동일기업투자한도	자산총액의 10% 이내 지분증권 총수의 10% 이내	**자산총액의 20% 이내** **지분증권 총수의 50% 이내**	없음
안전자산 투자 의무	없음	**자산총액의 10% 이내**	없음

* 구체적인 한도는 시행령에서 규정 예정

「참고조문 - 자본시장법」

제83조(금전차입 등의 제한) ①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할 때 집합투자기구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지 못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기구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할 수 있다.

1의2.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가 제229조제6호에 따른 주투자대상기업에 투자하는 경우

② 제1항에 따라 집합투자기구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그 차입금의 총액은 차입 당시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.

2. 제1항제1호의2에 따른 차입: 100분의 100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

④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할 때 집합투자재산 중 금전을 대여해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금전을 대여할 수 있다.

1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에 30일 이내의 단기대출을 하는 경우

2. 제229조제6호에 따른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가 같은 호에 따른 주투자대상기업에 금전을 대여하는 경우

마. 회수

□ **(상장)**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는 **90일 이내에 상장**하여야 함. 다만 **전문투자자의 자금으로만 설정**하여 상장 필요성이 적은 경우에는 **3년 이내의 범위**에서 **상장을 유예**할 수 있음(안 제230조 제3항).

□ 환매금지형 펀드이지만 존속기간 중 자금회수를 원하는 투자자는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어 환금성이 높으므로 일반투자자의 벤처기업 투자 접근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임.

「참고조문 - 자본시장법」

제230조(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) ①·② (생 략)

③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는 신탁계약 또는 정관에 투자자의 환금성 보장 등을 위한 별도의 방법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최초로 발행한 날부터 90일(전문투자자의 투자금만으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를 설정·설립하는 경우에는 3년) 이내에 그 집합투자증권을 증권시장에 상장하여야 한다.

바. 투자자보호

□ 정기·수시공시 등 공모펀드의 투자자 보호장치를 적용하면서, 시딩투자 의무화, 공시범위 확대(피투자기업 주요 경영사항 등, 하위법규 사항) 등 투자자 보호를 강화.

* 운용주체가 자신이 설정한 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일정비율(예: 5%) 이상을 일정기간(예: 5년) 보유

□ 또한, 시행령 등 하위법규 개정과정에서,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이 있는지 추가 검토하여 반영 계획

사. 제재

□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의 운용규제(안 제81조 제5항)을 위반한 경우, **집합투자기구의 등록취소**의 제재나 **임직원에 대한 처분과 형사벌** 등이 가능함.

「참고조문 - 자본시장법」

제253조(집합투자기구의 등록취소 등) ①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. 다만, 제3호의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.

7. **별표 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**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

제420조(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조치)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2조에 따른 금융투자업인가 또는 제18조·제117조의4 및 제249조의3에 따른 금융투자업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.

6. **별표 1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**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

제422조(임직원에 대한 조치)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자의 임원이 제420조제1항 각 호(제6호를 제외한다)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**별표 1 각 호의 어느**

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.

1. 해임요구
2.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
3. 문책경고
4. 주의적 경고
5. 주의
6.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

②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자의 직원이 제420조제1항 각 호(제6호를 제외한다)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**별표 1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**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그 금융투자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.

1. 면직
2. 6개월 이내의 정직
3. 감봉
4. 견책
5. 경고
6. 주의
7. 그 밖에 위법행위를 시정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

③ (생 략)

제444조(벌칙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1.~9. (생 략)

9의2. 제81조제5항을 위반하여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한 자

10.~29. (생 략)

[별표 1] 금융투자업자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처분 및 업무 위탁계약 취소·변경 명령의 사유
(제43조제2항제4호, 제420조제1항제6호·제3항 및 제422조제1항·제2항 관련)

90. 제81조제1항·제5항, 제83조 또는 제84조를 위반하여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한

경우

224의2.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에 관하여 제229조의2를 위반한 경우

[별표 2] 투자회사등에 대한 처분 사유(제253조제1항제7호·제2항 관련)

2. 제81조제1항·제5항, 제83조 또는 제84조를 위반하여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한 경우

47의2.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에 관하여 제229조의2를 위반한 경우

[참고 1] 기존 벤처·혁신기업 투자기구와의 차이(출처 : 금융위 보도자료)

【금융위 보도자료의 기존 모험자본 투자기구와의 차이점 발췌】

□ **벤처·혁신기업에 투자하는 다양한 투자기구**가 존재하고, 동 기구들은 **모험자본 생태계 조성에 크게 기여**하여 왔습니다.

□ 다만, 주요 모험자본 투자기구에는 각각 **일정한 한계**가 있습니다.

○ **정책금융, 벤처캐피탈**(VC)의 경우 **재정 등**(예: 모태펀드)**의 지원**을 받거나 **초기·창업기업 중심으로 비교적 소규모 자금을 지원**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

○ **공모펀드**의 경우 수시 환매가 전제되므로 환금성이 떨어지는 **비상장기업에 대한 투자**에 소극적입니다.

○ **경영권 참여** 등 **모험자본**의 성격이 강한 **기관전용사모펀드**(구 PEF)에는 **일반투자자 참여가 금지**되어 있습니다.

○ 또한, 상기 기구들은 모두 **일정기간**(예: 5년) **자금이 묶이는 경우**가 많아 **일반투자자들이 선뜻 투자하기 어려운 현실적 한계**가 있습니다.

□ 금번에 도입하는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는 ❶**조달자금의 원천과 규모**, ❷**운용대상**, ❸**일반투자자의 접근성** 면에서 차별화됩니다.

❶ (**조달자금의 원천·규모**) **순수 민간자본만**으로 이루어지며 **공모를 통한 대규모 자금조달** 등 **규모의 경제**가 가능합니다.

❷ (**운용대상**) 초기기업이나 구조조정기업은 물론 **성장단계 기업까지 폭넓게 투자**하여 **유니콘기업 육성**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.

❸ (**일반투자자의 접근성**) **상장**을 통해 **시장에서 거래**되므로 환금성이 높아져, 장기간 자금이 묶여 투자를 기피하던 **일반투자자의 벤처·혁신기업 투자 접근성**이 높아집니다.

구 분	기업성장펀드	벤처투자조합	사모펀드	공모펀드
운용목적	벤처·혁신기업 투자, 중소기업 scale-up	주로 창업초기기업에 모험자본 공급	제한없음	제한없음
자금조달 (투자자 범위)	제약없음 (정부자금×)	주로 정부(모태펀드) + 기관투자자	일반투자자 (→ 일반사모) 기관투자자 (→ 기관전용사모)	제약없음
펀드설정				
환매	폐쇄형	폐쇄형	개방형·폐쇄형	개방형·폐쇄형
상장	상장(90일 이내)	비상장	비상장	통상 비상장
규모	(예) 300억원 이상 (시행령 규정)	20억원 이상	규모제한 없음	규모제한 없음* * 단, 50억원 미만 소형 펀드는 일부 규제
존속 기간	5~20년	5년 이상	제한없음	제한없음* * 단, 폐쇄형은 존속기간 설정
운용대상	(예) 성장기업 (벤처·비상장기업 등에 자산의 60% 이상) (시행령 규정)	중소·벤처기업	제한없음 (기관전용의 경우 주로 성숙단계 투자)	펀드종류별로 상이 (증권/부동산/혼합)
운용방법				
차입	(예) 순자산 100% 이내 (시행령 규정)	차입 불가	순자산의 400% 이내	차입 불가* * 단, 환매필요시 예외적 허용
대출	대출 가능	대출 불가	대출 가능	대출 불가
투자 한도	- 동일기업에 펀드 자산의 20% 이내 - 피투자기업 지분의 50% 이내	제한없음	제한없음	- 동일기업에 운용사 총자산의 20% 이내 - 동일기업에 펀드 자산의 10% 이내 - 피투자기업 지분의 10% 이내
회수방법	거래소 시장매매	만기상환/양도	환매 / 지분양도	환매
운용주체	(예) 자산운용사, 벤처캐피탈, (창투사, 신기사) 증권사 (시행령 규정)	벤처캐피탈 (창투사, 신기사)	자산운용사 / GP	자산운용사
진입규제	집합투자업 인가	등록	일반사모·GP 등록	집합투자업 인가
투자자 보호장치	(예) 의무출자 비율(시행령) : 5%, 5년 이상	출자금의 1%(GP) (공모벤처조합: 5%)	없음	2억원, 3년 이상 (행정지도)
	안전자산 보유의무 : 10% 이상	없음	없음	없음
	(예) 피투자기업의 주요 경영사항 공시 의무	없음	없음	부실자산 공시* * 피투자기업 부도 등

* 青書 : 기업성장펀드와 他투자기구간 유사한 특징, 赤書: 기업성장펀드만의 고유한 특징

[참고 2] 자본시장법 일부 개정안 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9조(그 밖의 용어의 정의) ① ~ ㉙ (생 략)	제9조(그 밖의 용어의 정의) ① ~ ㉙ (현행과 같음)
<신 설>	㉚ 이 법에서 "기업성장집합투자업"이란 집합투자업 중 제229조제6호에 따른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를 통한 집합투자를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.
<신 설>	㉛ 이 법에서 "기업성장집합투자업자"란 집합투자업자 중 기업성장집합투자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.
제12조(금융투자업의 인가) ① (생 략)	제12조(금융투자업의 인가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제1항에 따라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.	② ----------.
1. ~ 5. (생 략)	1. ~ 5. (현행과 같음)
6. 대주주나 외국 금융투자업자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출 것	6. ---------- 요건 (기업성장집합투자업의 경우에는 제16조제2항에 따른 완화된 요건으로 한다)----------
가.·나. (생 략)	가.·나. (현행과 같음)

6의2.·7. (생 략)	6의2.·7. (현행과 같음)
③ (생 략)	③ (현행과 같음)
제81조(자산운용의 제한) ①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투자자 보호 및 집합투자재산의 안정적 운용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다.	제81조(자산운용의 제한) ① ---------- 운용(기업성장집합투자업자가 제229조제6호에 따른 주투자대상기업에 투자하는 경우는 제외한다)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---------. ---------- 해칠 ---------- 각 호의 행위를 ----------.
1. ~ 4. (생 략)	1. ~ 4. (현행과 같음)
②·③ (생 략)	②·③ (현행과 같음)
④ 제1항제1호가목 및 마목부터 사목까지와 제3호가목·나목, 제229조 각 호에 따른 투자비율은 집합투자기구의 최초 설정일 또는 설립일부터 6개월(제229조제2호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경우 1년)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는 적용하지 아니한다.	④ ---------- - 부동산집합투자기구와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----------.
<신 설>	⑤ 기업성장집합투자업자는 제229조제6호에 따른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

	니 된다. 1. 제229조제6호를 위반하여 운용하는 행위 2. 각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20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집합투자재산을 동일한 주투자대상기업(제229조제6호에 따른 주투자대상기업을 말한다. 이하 제3호 및 제5호에서 같다)에 투자하는 행위 3. 주투자대상기업이 발행한 지분증권 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지분증권 수(동일한 기업성장집합투자업자가 설정·설립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동일한 기업성장집합투자업자가 설정·설립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한 지분증권 수를 모두 더한 지분증권 수를 말한다)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4. 다음 각 목의 금융투자상품에 각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으로서

	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의 집합투자재산을 투자하지 아니하는 행위 가. 국채증권 나. 「한국은행법」 제69조에 따른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다.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 라. 그 밖에 금융투자업자의 경영건전성을 저해하지 아니하고 투자성이 낮은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상품 5. 주투자대상기업에 투자한 재산 외의 집합투자재산을 제229조제2호에 따른 부동산에 투자하는 행위
<신 설>	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기업성장집합투자업자가 가격 변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하게 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.
제83조(금전차입 등의 제한) ① 집합	제83조(금전차입 등의 제한) ① --

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집합투자기구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(借入)하지 못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기구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할 수 있다.	---------- 운용할 때 ----------.
1. (생 략)	2. (현행 제1호와 같음)
<신 설>	1의2.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가 제229조제6호에 따른 주투자대상기업에 투자하는 경우
2. (생 략)	1. (현행 제2호와 같음)
3. (생 략)	3. (현행과 같음)
② 제1항에 따라 집합투자기구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그 차입금의 총액은 차입 당시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.	② ---------- 가액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을 초과해서는 ---------.
<신 설>	1. 제1항제1호·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차입: 100분의 10
<신 설>	2. 제1항제1호의2에 따른 차입: 100분의 100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
③ (생 략)	③ (현행과 같음)
④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	④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

을 운용함에 있어서 집합투자재산 중 금전을 대여(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30일 이내의 단기대출을 제외한다)하여서는 아니 된다.	을 운용할 때 집합투자재산 중 금전을 대여해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금전을 대여할 수 있다. 1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에 30일 이내의 단기대출을 하는 경우 2. 제229조제6호에 따른 기업성장 집합투자기구가 같은 호에 따른 주투자대상기업에 금전을 대여하는 경우
⑤ (생 략)	⑤ (현행과 같음)
제183조(집합투자기구의 명칭) ① 집합투자기구는 그 상호 또는 명칭 중에 제229조 각 호의 집합투자기구의 종류를 표시하는 문자(증권·부동산·특별자산·혼합자산 및 단기금융을 말한다)를 사용하여야 한다.	제183조(집합투자기구의 명칭) ① ----------혼합자산·단기금융 및 기업성장----------.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제229조(집합투자기구의 종류) 집합투자기구는 집합투자재산의 운용대상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. 1. 증권집합투자기구 :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40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	제229조(집합투자기구의 종류) ----------. 1. 증권집합투자기구: 집합투자재산----------

하여 증권(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을 제외하며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 외의 증권을 기초자산으로 한 파생상품을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로서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집합투자기구	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제2호・제3호 및 제6호---------- ----------
2.・3. (생 략)	2.・3. (현행과 같음)
4. 혼합자산집합투자기구 :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집합투자기구	4. 혼합자산집합투자기구: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할 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에 따른 ----------
5. (생 략)	5. (현행과 같음)
<신 설>	6.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: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 중 100분의 40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집합투자재산을 성장 가능성이 높은 「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」에 따른 벤처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조합 등(이하 “주투자대상기업”이라 한다)에 금전의 대여, 증권의 매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투자하는 집

	합투자기구
<신 설>	제229조의2(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)
	①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를 설정·설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. 다만, 전문투자자의 투자금만으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를 설정·설립하는 경우에는 그 설정·설립일부터 3년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제4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.
	1. 투자신탁 또는 투자회사로 설정·설립할 것
	2. 제230조에 따른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로 설정·설립할 것
	3. 존속기간은 5년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할 것
	4. 모집가액은 5백억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일 것
	② 기업성장집합투자업자는 자기가 설정·설립한 각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 총수(추가설정 또는 신규발행된 증권 수를 포함한다)의 100분의 10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

	하는 증권 수 이상의 집합투자증권을 3년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유하여야 한다.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의 설정·설립·해지·해산, 주투자대상기업에 대한 투자비율의 산정, 집합투자증권의 발행·상장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제230조(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) ①·② (생 략) ③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는 신탁계약 또는 정관에 투자자의 환금성 보장 등을 위한 별도의 방법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최초로 발행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집합투자증권을 증권시장에 상장하여야 한다. ④·⑤ (생 략)	제230조(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) ①·② (현행과 같음) ③ ---------- 90일(전문투자자의 투자금만으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를 설정·설립하는 경우에는 3년) ----------. ④·⑤ (현행과 같음)
제444조(벌칙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	제444조(벌칙) ----------

처한다.	--.
1. ~ 9. (생 략)	1. ~ 9. (현행과 같음)
<신 설>	9의2. 제81조제5항을 위반하여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한 자
10. ~ 29. (생 략)	10. ~ 29. (현행과 같음)